

대구지방법원 2022. 2. 15 선고 2020가단13211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승 담당변호사 이재광

피 고 1. B 주식회사

2. C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성철

변 론 종 결 2022. 1. 25.

판 결 선 고 2022. 2. 15.

주 문

1. 피고 B 주식회사와 소외 D 주식회사 사이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E 2018. 3. 9. 작성 증서 2018년 제49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변제계약을 47,000,000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47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3.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4.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동 피고가,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 B 주식회사(이하 '피고 회사'라 함)와 소외 D 주식회사(이하 '소외 회사'라 함) 사이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E 2018. 3. 9. 작성 증서 2018년 제49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변제계약을 취소한다.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4,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
피고 C와 소외 회사 사이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E 2019. 4. 26. 작성 증서 2019년 제105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변제계약을 취소한다. 피고 C은 원고에게 4,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청구원인 사실

별지 '청구원인' 및 '준비서면' 각 기재와 같다.

2. 판단

가. 피고 회사에 대하여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나. 피고 C에 대하여:

(1)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,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평등하게 배당받기 위해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는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채무자가 그 채권자에 대한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에는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 자신의 책임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수

없다(대법원 2011. 12. 22. 선고 2010다103376 판결 등 참조).

(2)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, 위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2019. 4. 25. 3,200만 원, 같은 달 26. 5,100만 원 합계 8,300만 원을 대여하고 같은 달 26. 청구취지 기재 공정증서(채무금 대여금 8,300만 원, 변제기 2019. 5. 6., 이자 연 8%)를 작성·교부받았는바, 이는 정당한 채권의 행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. 갑 11-1, 2, 을 1-1 내지 3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F조합에 대한 2021. 6. 24.자 및 2021. 9. 6.자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위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2019. 4. 25. 3,200만 원, 같은 달 26. 5,100만 원 합계 8,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, 위 피고는 위 공정증서를 작성·교부받고 이에 기하여 대구지법 서부지원 2019타채33243호로 소외 회사의 대구광역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83,600,000원에 관하여 2019. 5. 10.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, 그 후 위 피고는 대구광역시로부터 약 6,800만 원을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위 인정사실과 원고 제출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피고 C에게 청구취지 기재 공정증서를 작성·교부한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책임재산을 위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,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점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성금석

별지